

## 부속서 8-다

### 자연인의 이동

#### 1. 적용범위

- 가. 이 부속서는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한 부속서 8-라에 명시된 범주에 속하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 입국하는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 나. 이 부속서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시민권 또는 거주나 고용에 관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다.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이 자국 국경의 일체성을 보전하고 자국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 자연인의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 또는 자국 영역 내의 일시 체류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가 이 부속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라.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에게 출입국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부속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이 협정에 따른 상품, 서비스무역, 또는 투자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2. 목적

이 부속서의 목적은 사업을 목적으로 한 양 당사국 간의 자연인의 이동과 관련하여, 이 장에 규정된 내용에 추가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 3. 신청 절차

- 가. 출입국 절차를 위한 완전한 신청을 수령한 뒤 가능한 한 신속하게, 각 당사국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승인되었을 경우, 체류기간 및 그 밖의 조건을 포함한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완전한 출입국 절차 신청을 접수한 한쪽 당사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속하게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체류기간 및 그 밖의 조건을 포함한 최종 결정 결과를 일시 입국 신청인에게 직접 또는 그의 고용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통보한다. 불완전한 신청의 경우, 당사국은 신청을 완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추가적인 정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기회를 제공한다.

- 다. 신청이 거부된 경우, 각 당사국은 최대한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러한 처분의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지한다. 신청인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새로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라. 출입국 절차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과된 모든 수수료는, 이 협정에 따른 상품 또는 서비스무역, 또는 투자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각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합치되어야 한다.

#### 4.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조건 및 제한

- 가. 각 당사국은 자연인의 각 범주에 대하여 체류 기간을 포함한 입국 및 일시 체류를 위한 조건 및 제한을 명시한,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자국 영역으로의 이동에 관한 구체적 약속을 부속서 8-라에 규정한다.
- 나. 각 당사국은 가호에 언급된 구체적 약속의 적용을 받는 자연인에게 부속서 8-라에 규정된 구체적 약속의 조건에 따른 입국 및 일시 체류를 보장한다. 다만, 그러한 자연인은 입국 및 일시 체류에 적용가능한 이민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 한쪽 당사국이 이 부속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일시 입국을 허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연인이 직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적용가능한 어떠한 면허 또는 그 밖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부터 면제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 5. 투명성

- 가.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 당사국으로의 입국, 일시 체류 또는 그 개신을 위한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구체적 약속과 관련한 신청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다른 쪽 당사국에 다른 방식으로 이용가능하게 한다.
- 나. 각 당사국은 자연인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접촉선 또는 그 밖의 메커니즘을 유지하거나 수립한다.
- 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자연인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기간을 둔다.
- 라.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 당사국은 일시 입국을 위한 신청의 처리와 관련된 현행 절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 마.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모든 새로운 요건 및 절차의 도입 또는 그 당사국으로의 입국, 최초의 일시 체류, 또는 그에 따른 개신 허가를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효율적으로 신청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가호에 언급된 기존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변경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노력한다.

## 6. 분쟁해결

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은 이 부속서에 따른 일시 입국 허용의 거부에 대하여 제15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 1) 그 사안이 반복된 관행과 관련된 경우, 그리고
- 2) 영향을 받은 자연인이 그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국내적 행정 구제 절차를 완료하였을 경우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재심 또는 불복청구 절차를 포함한 구제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관련된 자연인이 야기한 지체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호 2)목에 언급된 구제조치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 7. 자연인의 이동 위원회

가. 양 당사국은 출입국 공무원을 포함한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자연인의 이동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1년에 한번씩 회합한다.

나. 위원회는,

- 1) 이 부속서에 따른 자연인의 일시 입국에 영향을 주는 조치에 대한 정보 교환 절차를 수립한다.
- 2) 이 부속서에 따른 자연인의 일시 입국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의 개발을 고려한다.
- 3) 이 부속서의 이행 및 운영을 고려한다.
- 4)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그리고 양 당사국의 합의에 기반하여, 각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그리고
- 5) 상호 합의 하에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된 그 밖의 관심사항을 논의한다.

## 8. 협력

양 당사국은 사증 처리, 국경 안보, 그리고 자연인의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혜택을 얻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양 당사국은 이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상호 합의된 협력 활동을 행할 것을 고려한다.

- 가. 비자 전자 처리 시스템의 개발 및 이행에 대한 조언 제공
- 나. 국경 안보 및 자연인의 관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이행에 관한 경험, 규정 및 기술에 대한 정보 공유
- 다. 가호 및 나호에 열거된 사항과 같은 처리 향상을 증진하기 위한 다자 포럼에서의 협력

## 9.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출입국 절차란**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의 입국 및 일시 체류하도록 허용하는 사증, 허가, 승인 또는 그 밖의 모든 문서 또는 전자적 허가문서를 말한다. 그리고

**자연인의 이동이란** 영구적 거주의 의도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한쪽 당사국 영역 내로 일시 입국하는 것을 말한다.